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93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김미애 · 강승규 · 성일종
김 건 · 이달희 · 김승수
박수민 · 이양수 · 강명구
김기현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층 · 지원대상 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16조의3 신설 등).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등”을 “· 복합위기 1인가구(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위기 1인가구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이하 “복합위기 1인가구”라 한다)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3.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위기 1인가구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원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가구”를 “가구(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독 세대 주 가구(이하 “복합위기 1인가구”라 한다)의 생성 원인, 생애 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3.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위기 1인가구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원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p>1. ~ 5. (생략)</p> <p>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u>가구</u></p> <p>7. (생략)</p> <p>③ ~ ⑥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가구(복합위기 1인 가구를 포함한다)</u></p> <p>7.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